

서울시보

시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www.seoul.go.kr

제3738호
2021.12.10.(금)



목 차

◆ 자치법규

[입법예고]

제2021-3073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2
제2021-307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4
제2021-3075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5
제2021-308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6

자치법규

[입법예고]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3073호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인사운영 변경사항 반영,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한 부서 개편 및 정비,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사무분장 정비 및 부서 명칭 변경 등을 위해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인사운영 변경사항 반영을 위해 도시브랜드담당관(4호), 환경시민협력과장(4호), 지역공동체과장(4호), 서울기록원장(4호)의 개방형 직위 지정 해제(안 제5조, 제15조, 제18조, 제134조)

나. 효율적 조직운영을 위한 부서 개편

(1) 미래 시정의 장기 비전·전략 제시, 정책연구·개발 관련 전담조직인 ‘시정연구담당관’ 신설(안 제10조)

▶ 기획담당관 내 ‘시정운영계획 수립 및 조정, 도시경쟁력 평가’ 사무 및 조직담당관 내 ‘시정연구·시립대·서울연구원·직무발명’ 사무를 시정연구담당관으로 이관

(2) 성과중심 조직운영 및 업무 효율화를 위해 평가담당관을 정책기획관 산하에서 재정기획관 산하로 이관(안 제10조)

(3) 올림픽 유치일정 변경 등 행정환경 변화에 따라 ‘올림픽추진과’ 폐지(안 제17조의3)

(4) 데이터센터 내 ‘에스플렉스센터운영과’ 신설(안 제9조 및 제88조)

▶ 스마트도시담당관 내 에스플렉스센터 운영 사무를 데이터센터로 이관하고, 시설운영의 직영 전환에 따라 전담조직 신설

다. 업무이관 및 소관사무 현행화 등 사무분장 정비

- (1) 도시브랜드담당관 내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관련 사무’ 를 경제정책과로 이관(안 제 5조 및 제11조)
- (2) 스마트도시담당관 내 ‘메타버스 계획 총괄’ 관련 사무 신설 (안 제9조)
- (3) 갈등관리협치과 내 ‘위원회 관리, 민간전문가 운영 사무’ 를 조직담당관으로 이관(안 제10조 및 제18조)
- (4) 금융투자과 내 ‘글로벌 투자환경 개선 업무’ 확대에 따른 사무분장 정비(안 제11조)
- (5) 체육정책과 내 ‘제2서울연고 프로축구단 창단 업무’ 종료에 따라 사무분장 정비 및 스포츠산업 진흥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17조의3)
- (5) 체육정책과 내 ‘장애인 체육 관련 사무’ 를 체육진흥과로 이관(안 제17조의3)
- (6) 감사담당관, 공공감사담당관 및 안전감사담당관의 소관사무 현행화를 위해 ‘감사위원장이 명하는 감사사항의 처리’ 사무신설(안 제141조)
- (7) 공공감사담당관 내 ‘징계 처분된 공무원의 소청 및 행정소송에 관한 사무’ 신설(안 제 141조)

라.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내 부서 명칭 변경(안 제69조)

－ 열빛총괄과 → 설비총괄과, 녹색성장과 → 도로설비과, 시책사업과 → 설비설계과

마. 상수도사업본부 부서 재편 및 직제순 변경(안 제73조 및 제74조)

- － (안전조사과) 본부장 → 부분부장 산하로 재편
- － (경영관리부) ‘민원분석과’ 폐지, 홍보과 → 홍보민원과 명칭 변경
- － (시설부) ‘시설관리과’ 신설, 시설관리부 → 시설부, 누수방지과 → 누수대응과, 시설과 → 시설건설과 명칭변경
- － 수도물 공급관리 강화를 위한 건제순 변경
 - ▶ ‘생산부’ : 3번째 → 4번째, ‘급수부’ : 4번째 → 3번째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 팩스: 02-2133-0822, 이메일: rasrad135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3074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행정수요 증가 분야에의 대응 및 관리운영직 자연감소 등 업무환경 변화에 따른 인력 재배치를 위해 직렬 및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도시계획 수립 지원기능 강화, 상수도 시설 안전관리, 에스플렉스센터 직영 운영 등 행정수요 증가분야의 효율적 인력배치를 위한 직렬·직급 간 정원 조정(9명)

※ 본청 → 사업소 정원이체(3명) 포함

나. 관리운영직, 시설관리직 자연감소(퇴직, 공로연수 등)에 따른 결원 보충을 위하여 직렬·직급 간 정원 조정 및 재배치(42명)

3. 의견제출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 팩스: 02-2133-0822, 이메일: rasrad135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규칙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3075호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시행(’ 22.1.13)에 따라 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도입 근거가 마련되어, 서울시의 총 정원을 19,027명에서 19,053명으로 26명 증원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의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책지원 전문인력 증원

- (의회사무처) 5급 이하 +26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22.1.13 시행예정) 제41조 및 부칙 제6조에 따라 총 27명 배치 예정임 (순증 +26명, 재배치 1명)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조직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조직담당관(전화: 02-2133-6729, 팩스: 02-2133-0822, 이메일: rasrad135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공고 제2021-3086호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 취지와 주요 내용을 시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서울특별시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1년 12월 10일

서울특별시장

1. 개정이유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고, 시의회사무처 기구 규정 정비로 법적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사무처 설치 근거 인용조문을 현행화함(안 제1조).
- 나. 실·담당관 설치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고 있어 조례에서 규정한 실·담당관 설치 사항을 삭제함(안 제3조).
- 다. 정책지원관 도입 근거 규정을 신설함(안 제4조).
- 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라 의장의 시장에 대한 근무지원 요청 조항을 삭제함(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단체 또는 개인은 2021년 12월 1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장(참조: 기획담당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5층)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기획담당관(전화: 02-2133-6632, 팩스: 02-2133-0818, 이메일: miffie7@seoul.go.kr)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법인명 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이 조례의 입법안은 서울특별시 법무행정서비스(<http://legal.seoul.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안전한 서울 • 따뜻한 서울
- 꿈꾸는 서울 • 숨쉬는 서울



기관의 장	
선	
람	

공 람									